7 (제211회 - 제6차 부록)

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 ○ 지역의 안전한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와 임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하여 더 안전하고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

2. 주요내용
 ○ 자율방범대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 ○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항목 및 지원중단 사유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○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 나. 예산조치 : 46,000천원 정도
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 라. 기 타
 1) 입법예고 : 2015. 11. 5. ~ 2015. 11. 25. (의견 없음)
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주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(이하 “방범대”라 한다)란 각 읍·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.
2. “자율방범연합대”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란 각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임무)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미아・가출인 보호 활동
3.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
4. 그 밖에 군민 보호를 위해 성주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로 하는 사항

제4조(조직 및 구성・운영)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・운영에 관한 사항은「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」제4조와 제5조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 등)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방범 활동을 위한 경비
2.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
3. 상해보험 가입 보험료
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파출소(치안센터)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한 경우

제6조(지도 및 감독)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「성주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